

문서번호	총무처-16139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6.05.16.
공개여부	공개

★주임	팀장	총무처장	경영전략본부장	
협 조				

업무용차량 관리지침 개정

2016. 5

업무용 차량관리지침 중 개정지침

[제안요지]

1. 개정 이유

- 업무용차량이 오래되어 교체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단주행거리 요건(12만 km)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며,
※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2015.2.3. 개정), 서울시공용차량관리규칙 (2015.4.16. 개정)
- 차량관리부서 지정을 위하여 직제변경 때마다 지침이 반복적으로 개정되는 불합리함을 해소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차량의 교체 기준 변경 및 기타 미비사항 정비 (제5조)
 - 차량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차량교체 가능 추가
- 나. 차량관리부서 지정을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위임 (제9조)

3. 참고사항

- 가. 제안근거
 -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및 서울시공용차량관리규칙 개정 반영
- 나. 절차 : 본부장 결재 후 공포·시행

업무용 차량관리지침 중 개정지침(안)

업무용차량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장은 차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내용 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1. 별지 제1호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
 2. 최초 등록일부터 별지 제1호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
 4. 이사장이 정부 정책 또는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장은 공단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 관리부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따로붙임 : 1. 개정내역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업무용차량 관리지침 (2016.05 개정) 1부. 끝.